정　　관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협회는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질적 향상과 전력기술인의 교육훈련・관리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3. 28)

제2조(명칭) 본 협회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Electrical Engineers Association」(약칭 “KEEA”)로 한다. (개정 2014. 7. 1, 2025. 3. 19)

제3조(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4조(일반사업) ①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력기술에 관한 조사・연구・개발・표준・출판・홍보 및 광고(개정 2016. 3. 10, 2019. 3. 27)
2.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 및 관리
3. 전기안전관리자, 전력기술인, 설계사 및 감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4. 전력시설물의 진단・기술지도 및 사고조사・분석
5.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신고 업무
6.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개정 2010. 3. 11)
7. 전력기술인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
8. 부설 기구의 설치운영 (개정 2014. 4. 29)
9. 정기간행물 발간 및 전기관련 인터넷 뉴스서비스 (신설 2016. 3. 10)
10.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 및 전기안전관리분야 발전을 위하여 주무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신설 2025. 3. 19)
11.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사업 등) 발전 및 관련 설비의 운영, 관리, 판매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26. 3. 17)
12.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협회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제 증명서 발급
2.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설계사 면허・감리원 자격수첩 발급
3. 전력기술인・감리원・설계업자・감리업자・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의 직무에 대한 기술 지도
4. 회원의 등록 및 관리
5. 전력기술에 관한 법령연구 및 개선 건의
6. 정부 또는 기타 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7. 협회재산 및 기타 부대시설의 임대 및 운영・관리(신설 2013. 3. 8)
8. 제1호 내지 제7호와 관련된 업무 (개정 2002. 3. 28, 2013. 3. 8)

③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설 기구의 설치・운영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 4.29)

제5조(공제사업) ① 협회는 출자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한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다음 각호의 공제사업을 행한다.(개정 '98. 3. 17, 2003. 3. 11)

1. 출자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보증
2. 출자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공제
3. 출자자에 대한 자금의 융자
4. 기타 공제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출자자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업체 및 전기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업체와 제7조제1항에서 정한 회원으로서 공제사업에 소정의 금액을 출자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서 정한 회원 및 전기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업체(개인대행 포함)는 신청에 의하여 출자증권을 취득함으로서 출자자가 될 수 있다.(개정 '98. 3. 17, 2025. 3. 19)

③ 공제사업의 총출자금액은 제2항에서 정한 출자자가 출자한 액면가액의 합으로 하며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98. 3. 17)

④ 협회는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98. 3. 17)

⑤ 출자증권 1좌의 액면가액은 10만원으로 한다.

⑥ 협회는 공제사업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수료, 대출이자, 어음할인료,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

⑦ 공제사업의 출자증권 발행등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며 공제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제사업위원회를 둔다.(개정 '98. 3. 17)

⑧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회원이 출자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5좌 이상의 출자증권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98. 3. 17)

⑨ 협회는 출자자의 승인을 얻어 공제사업의 수익증대를 위한 부동산관련 사업투자와 임대 및 운영관리를 할 수 있다.(신설 '18. 2. 20)

⑩ 제9항의 출자자 승인은 총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자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출자자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18. 2. 20)

제 3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제7조에서 정하는 전력기술인과 업체·단체로서 협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제7조(회원의 종류) ① 회원의 종류는 직무회원·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개정 2013. 3. 8)

1. 직무회원(개정 2002. 3. 28)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감리업을 등록한 업체에 보유인력으로 등록된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나.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개정 2025. 3. 19)
 다. <삭제 2013. 3. 8>
2. 일반회원 : 제1호 규정 이외의 전력기술인
3. <삭제 2013. 3. 8>
4. 특별회원 : 전기관련 업체(기관 포함) 또는 협회의 취지에 동의한 업체·단체 및 개인(개정 2013. 3. 8)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회원의 구분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2. 3. 28)

제8조(회원의 가입절차) ① 회원의 가입절차는 제7조에서 정한 자로서 협회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8. 3. 17, 2002. 3. 28)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② 삭제

③ 협회는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하여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회원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협회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2. 임원, 대의원, 기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다만, 특별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며, 단체로 회비를 납부하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3. 3. 11, 2010. 3.11, 2013. 3. 8, 2016. 3. 10)

②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과 총회·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준수
2. 전력기술인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전력기술 업무의 성실한 수행
3. 회비의 납부
4. 삭제 〈'98. 3. 17〉
5. 기타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과 신상변동에 따른 신고

③ 삭제 〈'98. 3. 17〉

④ 회비를 규정으로 정하는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차기년도 정기총회에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2. 3. 28)

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2. 3. 28)

⑥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협회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이해를 달리할 수 있는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되,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제14조4항의 당연직 이사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7. 4. 17)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신설 2017. 4. 17)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제명·탈퇴)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상실 또는 제명된 것으로 본다.

1. 사망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개정 2025. 3. 19)

3. 삭제 〈2002. 3. 28〉
4. 회원이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명된 때
5. 회원이 3년동안 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 당해년도 말일에 제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3. 28)

② 제7조에서 정한 회원이 협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28, 2013. 3. 8)

제11조(회원의 자격정지 등)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1. 행정관청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설계사의 면허정지·감리원 자격의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협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 (개정 2002. 3. 28)
3. 회비를 규정으로 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정지된 자는 이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선임된 직위에서 해임된다. 다만, 회비를 규정으로 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회원자격이 정지된 대의원이 회비를 납부하여 회원자격이 복권된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도 복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3.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된 회원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제9조제2항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및 징계) ①협회는 전력기술의 향상 또는 협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회원이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훼손시켰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8)

③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정수) 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상근부회장 1인 포함) (개정 2010. 3.11)
3. 감사 2인(개정 2002. 3. 28, 2004. 4. 16)
4. 이사 15인이상 30인이내(회장 1인, 부회장 5인, 상근하는 이사 1인 포함)

(개정 2002. 3. 28, 2005. 5. 20, 2010. 3.11, 2013. 3. 8)

제14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2. 3. 28)

④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선출방법 등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 주무과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상근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역·전문분야별 협의회의 장 등을 당연직 이사로 둘 수 있다. (개정 2002. 3. 28, 2010. 3.11, 2013. 3. 8)

⑤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출에 있어서 회원이 아닌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 인원은 재적임원(회장 및 감사 제외)의 100분의 40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3. 8, 2014. 4.29)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후보자의 자격·등록·선출방법 및 절차등을 따로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8)

⑦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선출방법으로 회원의 전자투표를 병용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전자투표의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개정 2013. 3. 8)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8, 2023. 3. 20)

②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2. 3. 28, 개정 2013. 3. 8)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8)

④ 임기의 기산과 종료는 임원으로 선출된 때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년도의 정기총회에서 차기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02. 3. 28, 2013. 3. 8)

⑤ 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그 보선은 다음 총회 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8, 2013. 3. 8)

⑥ 임원을 보선할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2. 3. 28, 신설 2013. 3. 8)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5. 3. 19)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02. 3. 28〉

5. 협회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이해를 달리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재직 또는 소속 중인 자. 단, 제14조4항의 당연직 이사 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0. 3.11, 단서신설 2017. 4. 17)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미리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 3. 28)

③ 상근하는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기구를 총괄하며 회무를 집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처리한다. (개정 2002. 3. 28)

⑤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 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일이 발견된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며 보고하는 일
5.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⑥ 상근임원은 다른 법령에 의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주무부처에서 승인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각종회의 및 행사참석 등 협회의 업무 수행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회장에게는 직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8, 2016. 3. 10)

②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명예회장·고문 및 명예회원) ① 협회에 명예회장과 약간 명의 고문 및 명예회원(이하 '명예회장 등' 이라 함)을 둘 수 있다. 단, 임기는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 3.20, 2016. 3. 10)

② 명예회장은 전직 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단, 직전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예회장에 우선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2. 3.20, 개정 2016.

3. 10)

③ 전직 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개정 2004. 4. 16, 2012. 3.20, 2016. 3. 10, 2025. 3. 19)

④ 명예회원은 협회의 설립 및 운영 목적에 찬동하고, 협회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3. 10)

⑤ 명예회장 등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2. 3.20, 2013. 3. 8, 2016. 3. 10)

⑥ 명예회장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명예회장이 협회의 업무 수행시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3.20, 2016. 3. 10)

제 5 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① 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1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중 시·도회총회에서 회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0. 3.11)

② 대의원의 선출 정수는 200인이내로 한다.

③ 임원 및 시·도회장은 총회의 대의원이 되며, 제2항에서 정한 대의원 정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11)

④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산과 종료는 제15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8. 3. 17, 2002. 3. 28, 2013. 3. 8)

⑤ 대의원에 입후보하는 자의 자격·선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⑥ <삭제 2014. 4.29>

제22조(총회소집)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 결의로 요구한 때
3.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요구한 때
4.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23조(총회의 소집통지) ①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목

적을 명시하여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불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매각에 관한 사항. 단,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도회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3. 3. 8, 2019. 3. 27)
6. 협회의 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안하는 사항 (개정 2013. 3. 8)
8. 회원의 제명과 복권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3. 8)
9.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장의 선출 시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02. 3. 28)

② 의안 표결결과 가부동수가 된 경우에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이 경우 의장이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2. 3. 28)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4조제1호 및 제3호, 제6호의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의원은 총회에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없다. 다만, 대의원이 총회에 출석치 못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결권의 제한) 의장 또는 대의원이 협회와 법적 분쟁 또는 금전 및 재산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결을 요구하는 의안인 경우에는 당사자는 해당 의결 사항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2. 3. 28)

제 6 장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2. 3. 28)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의안을 명시하여 연서로 요구한 때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심의안건을 첨부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의안의 성격상 기밀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 3. 8)

1. 총회에 제안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부회장 및 상근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시·도회의 설치·폐지 및 시·도회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3.11, 2013. 3. 8, 2019. 3. 27)
7.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8. 회비의 책정 및 제수수료 등의 부과에 관한 사항
9.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10.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11. 명예회장의 위촉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3. 8, 2025. 3. 19)
12. 회원권 등 무형자산과 주식 등 투자자산에 대한 취득 및 매입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3. 27)
13. 기타 타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에 대한 출연·출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3. 27, 개정 2025. 3. 19)
1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 제안하기 위하여 정관의 변경을 의결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 3. 28)

② 의안 표결결과 가부동수가 된 경우의 결정권은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이사 중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되, 결의권은 부여하

지 아니한다.

제 7 장 위원회 및 협의회

제30조(위원회) ① 협회는 협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각 전문분야별 위원회를 두며, 회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전문분야별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의2(협의회) ① 협회는 전력기술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역 및 전문분야별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8, 2003. 3. 11, 2026. 3. 17)

1. 상주협의회
2. 감리협의회
3. 설계협의회
4. 대행협의회
5.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되는 협의회는 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협회장은 이를 심사하여 공식 협의회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관리업무를 협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8, 개정 2013. 3. 8)

③ 각 협의회 위원에게는 회의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3. 11)

④ 협의회의 설치·운영과 업역·전문분야별 협의회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2. 3. 28, 개정 2013. 3. 8)

제 8 장 시·도회 및 사무기구

제31조(시·도회장 회의) 협회는 회원의 권익향상 및 시·도회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회장회의를 두며, 시·도회장회의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 3. 28, 2010. 3.11)

제32조(시·도회) ① 협회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필요한 곳에 시·도회

를 두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 3. 28, 2010. 3. 11, 2025. 3. 19)

② 시·도회에 시·도회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3.11)

③ 시·도회에는 시·도회장 1인과 시·도부회장 1인을 포함한 약간명의 비상근 운영위원 및 비상근 감사 2인 이내를 둔다. (개정 2010. 3.11)

④ 시·도회장과 감사는 시·도회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0. 3.11, 2013. 3. 8)

⑤ 운영위원(시·도부회장 포함)은 시·도회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선출방법은 제7항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 3.11, 2016. 3. 10)

⑥ 시·도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8, 2010. 3.11), (단서신설 2010. 3.11, 개정 2016. 3. 10, 2023. 3. 20)

⑦ 시·도부회장·감사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8, 2010. 3. 11, 2023. 3. 20)

⑧ 시·도회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또는 시·도회장, 감사 및 운영위원에 입후보하는 자의 자격과 선출방법 및 절차 등 시·도회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0)

제33조(사무기구 및 급여) ①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회와 시·도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개정 2002. 3. 28, 2010. 3.11)

② 사무기구의 직제, 정원, 인사,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 3. 28)

③ 직원의 급여, 수당, 상여, 퇴직금 및 사망급여금, 공상, 근로재해보상금, 순직 기타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2. 3. 28)

제 9 장 재 산 및 회 계

제34조(재산) 협회는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자산목록에 기재한 것으로 한다.

제35조(수입) 협회의 수입은 회비, 사업수입, 제수수료, 자산운용수입, 정부출연 자금 및 지원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36조(지출) ① 모든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며 관,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회계년도 개시이후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경비를 지급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그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③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

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37조(예산과 결산) ① 협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전 회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및 당해 회계년도의 사업 계획과 수지예산안을 작성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잉여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예산 대 집행실적표
6. 감사보고서

제38조(회계의 구분) ①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9조(회계년도) 협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40조(회계기준) 협회의 회계처리는 기업의 일반회계 원칙에 따르되, 그 기준·절차 및 예산·결산 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회비) ① 회비라 함은 협회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 종류별로 부과 징수하는 입회비, 연회비를 말한다.

② 회비는 회원의 종류별 또는 업종별로 구분한다.

③ 회비의 납부방법, 기일,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교육비 및 제수수료 등) 협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교육비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
2. 법령에 의하여 설계사 면허를 받는 자
3. 법령에 의하여 감리원 자격수첩을 받는 자
4.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 및 경력확인을 받는 자
5. 공제사업을 이용하는 자
6.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을 신고하는 자

7. 기타 제증명을 발급받고자 하거나 추천을 의뢰하는 자

제 10 장 보 칙

제43조(의사록) 의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자 2인 이상의 기명 날인을 받아 협회에 비치한다.

제44조(해산) ① 협회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협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채무 변제후의 잔여재산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한 법인에게 기증하거나 회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45조(정부의 승인 및 보고) ① 다음 사항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협회의 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리
3. 회장 및 상근임원의 선임
4. 공제규정의 변경
5. 부설기관의 설립
6. 신규 수익사업의 경영

② 다음 사항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기타 협회와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제46조(제규정) ①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또는 이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② 회장은 제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준용) 이 정관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발기인 및 초대대의원의 경과조치) ①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창립총회에 참석한 자는 참석인원수에 관계없이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초대대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정관중 대의원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도 지부정기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할 때 까지로 한다.

제3조(1997년도 정기총회)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창립총회로 1997년도 정기총회를 갈음하고,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은 1997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이 정관 시행 이전의 사단법인 대한전기기사협회(이하 "기사협회"라 한다)에 속하고 있던 연혁·회원·재산·사업·회비·업무·직원·지부 등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협회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이전의 기사협회 제규정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의 규정이 제정될 때 까지 이를 준용한다.

③ 이 정관 시행 이전에 기사협회가 발급한 회원증·경력확인증·기타 모든 증명서는 협회가 발급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지부장·부지부장 및 운영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기사협회 지부의 지부장·부지부장 및 운영위원은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1997년도 지부정기총회에서 지부장·부지부장 및 운영위원을 새로이 선출할 때 까지로 한다.

제6조(기명 날인의 간소화) 협회 설립시의 정관과 창립총회의 의사록 작성시의 기명 날인은 창립총회 참석자 전원을 대신하여 창립총회에서 선출되는 회장과 상근하는 이사만으로 기명 날인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출자의 유예) 기사협회의 회원은 이 정관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서 정하는 공제사업 출자를 199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3월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 출자자에 대한 조치) ① 종전규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공제사업에 기 출자한 자는 출자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출자자 본인이 탈퇴를 희망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해 탈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기출자한 출자금에 대하여 1998년 6월 30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2월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임기의 경과조치) 제15조제1항 및 제32조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99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본부 및 지부 감사의 임기는 2000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원의 경과조치) 제9조제4항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2000년 2월 정기총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한 특별회원에 한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정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03. 3.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04.. 4..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05. 5.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0. 3.11.)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도회장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6항의 단서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시·도회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2012년 개최되는 시·도회총회에서 선출되는 시·도회장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2. 3.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3. 3. 8.)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감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2015년 개최되는 총회에서 선출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4. 4. 29.)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명칭)은 2014.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은 2013. 3. 8 승인된 정

관 부칙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6. 3. 10.)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 용) 제32조 제6항의 단서규정은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5년 시·도회 총회에서 새로이 선출된 시·도회장(2012년도 선출되어 2015년도에 연임한 시·도회장 제외)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7. 4. 17.)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 용) 제9조 제6항은 2018년 중앙회 및 시·도회 정기총회(회장, 감사, 시·도회장 등의 선출)부터 적용한다. 단, 종전 정관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자(회장, 감사, 시·도회장에 한함)는 종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8. 2.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9. 3. 27.)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23. 3. 20.)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　용) 부칙 제1조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본문 제32조 제6항은 제19대(2021년, 2022년 보선포함)에 선출된 자부터 적용하되, 제18대(2018년)에 이어 연임한 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25. 3. 19.)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26. 3. 17.)로부터 시행한다.